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19.5.9.개정, ‘19.5.9.시행)의 반영으로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나. 금고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9명 이내의 위원 →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

라.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별표)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3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관련)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소 계	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안정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	
	- 대손충당금적립율	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소 계	20	
2.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미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소 계	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8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소 계	25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소 계	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 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 필요----- ----- ----- ----- -----.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생략)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 ----- ----- -----.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신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신 설>

④ ~ ⑥ (생략)

제11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등)

① · ② (생략)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이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삭 제>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1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새로 -----

체결한 약정기간의 <u>잔여기간</u> 으로 한다.	----- <u>남은 기간</u> -----.
제13조(일비 및 여비등의 지급) 시 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u>대하여</u> 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일비 및 여비등의 지급) - ----- <u>대해서</u> ----- ----- -----.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관련)				[별표]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6 4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자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실험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1) 7 7 6 1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9) 6 6 5 2	
2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2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미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7 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8 6 7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2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5 2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 2. (생략)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 ②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4. 금고의 지정절차

-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소관 실·과		징 수 과
입 안 자	과 장	김 회 식
	담 당	차 인 숙
	담 당 자	서 윤 지 (480-6893)